「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조(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 ① (생 략)	제4조(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최초로 가격신고하는 건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고, 동일 연도 내의 가격신고 건에는 수입신고서 상 신고인 기재란에 최초 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건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갈음한다.	② ——— 과세가격결정자료가 첨부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 갈음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가격신고서 서식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한 관련 규정 개정 등
③ 법 제27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려는	③ 법 제27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려는	•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정

자는 별표 제8호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중 해당 사항이 있는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의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자는 별표 제8호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중 해당 사항이 있는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의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수입신고 건별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완화
④ ~⑥ (생 략)	④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2차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8조 제2항 규정과 일치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라 요구한 과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2차 자료제	

세가격결정자료를 납세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4. (생 략) ⑨ (생 략)	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4.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8조(확정가격신고) ① 제6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잠정가격신고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확정가격신고서와 영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확정된 가격을 신고(이하 “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이 잠정가격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한 과세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⑥ (생 략)	제8조(확정가격신고) ① ——————————— ——————————— ——————————— ——————————— -- 영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 ——————————— ——————————— ——————————— ——————————— ——————————— ———. ② ~⑥ (현행과 같음)	•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개정(’25.2.28.)에 따른 관련 위임 규정 추가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③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③	

(생 략)	(현행과 같은)	
④ 제3항에 따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④ ——————————————————————————.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7. 수입항에서의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가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수입항에서의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 등이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입 후 발생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3조(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③ (생 략)	제43조(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서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은 접수증 교부일로 본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일반) 접수일 명확화
② ~③ (생 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사전심사 검토결과의 처리) ①	제52조(사전심사 검토결과의 처리)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종료한 때에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53조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종료한 때에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53조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협의회(이하 "특수관계 협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명칭 변경(명확화)
제53조(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①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위원회를 둔다.	제53조(특수관계 사전심사 협의회) ①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특수관계 협의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특수관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4. 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라 특수관계 협의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③ 특수관계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	

심의한다.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 략)	1. 2. (생 략)
3. 그 밖에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특수관계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특수관계 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특수관계 사전심사 담당 심사팀장 및 심사요원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특수관계 사전심사 담당 심사팀장 및 심사요원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을 특수관계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상정된 특수관계 사전심사 심의 안건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취지로 의결을 할 수 있	⑥ 특수관계 협의회는 상정된 특수관계 사전심사 심의 안건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취지로 의결을

으며,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심의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심의 안건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⑦ 심의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심의 안건을 수정·보완하여 특수관계 협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채택하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고시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원회가 채택하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에도 심의 안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채택하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고시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협의회가 채택하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에도 심의 안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수관계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제55조(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 ① 관세평	제55조(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 ① 관세평

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제48조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철회 요청 또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단순 추가, 결정서의 문구 명확화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실무회의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제48조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철회 요청 또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단순 추가, 결정서의 문구 명확화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실무회의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적용기간, 변경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ACVA 결정 물품 적용 기간 등 명확화
제56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생 략)	제56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 —————————— —————————— —————— 2개월 —————— ———.	• 과세가격 산정에 필요한 동종·동류비율 산출이 장기화 되는 경우 연례보고 제출기한 연장하여 기업 부담 완화
③ ~④ (생 략)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본부세관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제53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본부세관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제53조의 특수관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관세조사와의 관계) ①·② (생략)	제58조(관세조사와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로 인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한하여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통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결정·통보된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을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제1항제1호 개정 반영
제65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재검토 기한) ——————— 2027년 ———————.	• 재검토 기한 재설정
<신 설>	부칙 <제2026-00호, 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 관련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제8호는 2026년 00월 00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신설

현 행	개 정
[별표 제6호] **가격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 작성요령** **1.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신고시 서식(A)** **Ⅰ.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2란까지)**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을 기재 **7란** :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최초로 가격신고하는 건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첨부하고 이후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초 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입 **8(a)란**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선택(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 **8(b)란** : 특수관계의 종류를 선택 **8(c)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선택 **8(d)란** :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공식 선택 **9(a)란** :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조건에 구매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즉,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그 물품의 거래가격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예”로 답하고, 서식(B)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등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한은 “아니요”라고 답하여야 함 **9(b)란** :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가격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아니요"라고 답하고, 자세한 내역과 가격을 신고함. 조건 또는 사정이 없어도 "아니요"라고 답함.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라고 답해야 함. "예"라고 답하거나 이 질문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문의. 이 경우 서식(A)가 아니라 서식(B)로 작성하여야 함. **9(c)란** : 수입물품의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다면 “예”로 답하고, 없다면 “아니요”로 답하며, “예”라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9 (d)에 답하여야 함 **9(d)란** : 질문9 (c)에서 귀속된 금액을 관세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없다면 “예”라고 답하고 서식(B)으로 작성하여야 함 **10(a)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잠정가격신고번호는 자동 생성) **10(b)란** : 잠정 가산율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 비율을 기재 잠정가산금액 신고과세가격 - 잠정가산금액 **10(c)란** : 잠정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 **10(d)란** : 가격확정예정시기를 년, 월, 일로 기재 **10(e)란** : 관련 수입건의 거래 계약기간을 기재	[별표 제6호] **가격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 작성요령** **1.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신고시 서식(A)** **Ⅰ.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1란까지)**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을 기재 **7란** :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최초로 가격신고하는 건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첨부하고 이후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초 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입 **8(a)란**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선택(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 **8(b)란** : 특수관계의 종류를 선택 **8(c)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선택 **8(d)란** :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공식 선택 **9(a)란** :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조건에 구매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즉,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그 물품의 거래가격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예”로 답하고, 서식(B)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등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한은 “아니요”라고 답하여야 함 **9(b)란** :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가격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아니요"라고 답하고, 자세한 내역과 가격을 신고함. 조건 또는 사정이 없어도 "아니요"라고 답함.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라고 답해야 함. "예"라고 답하거나 이 질문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문의. 이 경우 서식(A)가 아니라 서식(B)로 작성하여야 함. **9(c)란** : 수입물품의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다면 “예”로 답하고, 없다면 “아니요”로 답하며, “예”라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9 (d)에 답하여야 함 **9(d)란** : 질문9 (c)에서 귀속된 금액을 관세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없다면 “아니오”라고 답하고 서식(B)으로 작성하여야 함 **10(a)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잠정가격신고번호는 자동 생성) **10(b)란** : 잠정 가산율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 비율을 기재 잠정가산금액 신고과세가격 - 잠정가산금액 **10(c)란** : 잠정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 **10(d)란** : 가격확정예정시기를 년, 월, 일로 기재 **10(e)란** : 관련 수입건의 거래 계약기간을 기재

현 행	개 정
10(f)란 : 잠정가격과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하여 Y(해당) 또는 N(해당무)을 기재 **11(a~d)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10(f)란** : 잠정가격과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하여 Y(해당) 또는 N(해당무)을 기재 **11(a~d)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Ⅱ. Part A (산출근거)	**Ⅱ. Part A (산출근거)**
12(a)란 : 송품장상의 화폐로 표시된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 괄호안에는 외국환을 원화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을 기입 **12(b)란** :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 사정에 해당), 채무상계, 채무변제금액 등의 합계를 기입(9(b)란 참조). **13란** : 원화로 환산하여 12(a)와 12(b)란 금액합계를 기입	**12(a)란** : 송품장상의 화폐로 표시된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 괄호안에는 외국환을 원화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을 기입 **12(b)란** :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 사정에 해당), 채무상계, 채무변제금액 등의 합계를 기입(9(b)란 참조). **13란** : 원화로 환산하여 12(a)와 12(b)란 금액합계를 기입
Ⅲ. Part B (가산금액) : 추가 기재사항	**Ⅲ. Part B (가산금액) : 추가 기재사항**
14(a)란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지급금액을 기입 **14(b)란** : 중개료 금액 기입 **14(c)란** : 당해 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컨테이너비용(freight container제외) 및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한 포장비용 **15란** : 수입물품의 생산 및 대한민국내로의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되는 상품 및 용역의 비용 기입. **16란** : 수입물품과 관련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기입 **17란** : 9(b)란에서 “예”라고 답변하였으면, 수입물품의 사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귀속이익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 기입 **18란** : 대한민국내의 수입장소까지 수입물품의 운송비용을 기입(소계) **18(a)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까지 발생하는 운송비용과 왕복운임을 기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8(b)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까지 발생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기입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8(c)란** : 운송관련 보험료 기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란** : 14 내지 18란의 금액을 더하여 합계금액 기입	**14(a)란**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지급금액을 기입 **14(b)란** : 중개료 금액 기입 **14(c)란** : 당해 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컨테이너비용(freight container제외) 및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한 포장비용 **15란** : 수입물품의 생산 및 대한민국내로의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되는 상품 및 용역의 비용 기입. **16란** : 수입물품과 관련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기입 **17란** : 9(c)란에서 “예”라고 답변하였으면, 수입물품의 사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귀속이익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 기입 **18란** : 대한민국내의 수입장소까지 수입물품의 운송비용을 기입(소계) **18(a)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까지 발생하는 운송비용과 왕복운임을 기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8(b)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까지 발생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기입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8(c)란** : 운송관련 보험료 기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란** : 14 내지 18란의 금액을 더하여 합계금액 기입
Ⅳ. Part C (공제금액)	**Ⅳ. Part C (공제금액)**
20란 : 대한민국내에서 물품 운송비용 기입(물품의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한 경우) **21란** :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 등의 물품에 대해 수입후에 행해진 작업에 따른 비용 기입. 물품의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하다면 **22란** :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격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기타 다른 비용 기입. 그 비용의 성격이 기술되어야 함. **23란** : 송품장상의 가격에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기입. 필요시에는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금액을 기재 **24란** : 20란 내지 23란의 금액을 더하여 그 합계금액을 기입 **25란 (신고납부 과세가격, A+B-C)** : Part A, B(13란과 19란)의 합계금액에서 Part C(24란)의 금액을 빼서 그 결과 금액을 기입. 이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임.	**20란** : 대한민국내에서 물품 운송비용 기입(물품의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한 경우) **21란** :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 등의 물품에 대해 수입후에 행해진 작업에 따른 비용 기입. 물품의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하다면 **22란** :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격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기타 다른 비용 기입. 그 비용의 성격이 기술되어야 함. **23란** : 송품장상의 가격에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기입. 필요시에는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금액을 기재 **24란** : 20란 내지 23란의 금액을 더하여 그 합계금액을 기입 **25란 (신고납부 과세가격, A+B-C)** : Part A, B(13란과 19란)의 합계금액에서 Part C(24란)의 금액을 빼서 그 결과 금액을 기입. 이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임.

현 행	개 정
2. 기타 가격(제2방법~제6방법) 신고시 서식(B) **Ⅰ.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2란까지)**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을 기재 **7란** :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최초로 가격신고하는 건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첨부하고 이후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초 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입 **8란** : 제1방법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체크 **9란** :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공식 선택. **10(a)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잠정가격신고번호는 자동 생성) **10(b)란** : 잠정 가산율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 비율을 기재 잠정가산금액 신고과세가격 - 잠정가산금액 **10(c)란** : 잠정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 **10(d)란** : 가격확정예정시기를 년, 월, 일로 기재 **10(e)란** : 관련 수입건의 거래 계약기간을 기재 **10(f)란** : 잠정가격과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하여 Y(해당) 또는 N(해당무)을 기재 **11(a)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이 반입된 사유 또는 용도 **11(b)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의 송품장 상의 과세가격 근거를 간략히 기재 **12(a~d)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Ⅱ. 제2방법 또는 제3방법 경우 (Part A~C)** **Part A** **13란** : 이 란의 첫째 칸에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기입. 이 가격이 원화가 아니면 통관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입하고 이에 따라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둘째 칸에 기입. **Part B :** Part B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기입 **14(a)란 :** 13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수량에서 현재 수입하는 건보다 적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의 수량이라면 더 낮아 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2. 기타 가격(제2방법~제6방법) 신고시 서식(B)** **Ⅰ.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2란까지)**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을 기재 **7란** :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최초로 가격신고하는 건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첨부하고 이후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초 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입 **8란** : 제1방법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체크 **9란** :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공식 선택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닌 경우 '⑤기타(특수관계거래 아님)' 기입 **10(a)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잠정가격신고번호는 자동 생성) **10(b)란** : 잠정 가산율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 비율을 기재 잠정가산금액 신고과세가격 - 잠정가산금액 **10(c)란** : 잠정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 **10(d)란** : 가격확정예정시기를 년, 월, 일로 기재 **10(e)란** : 관련 수입건의 거래 계약기간을 기재 **10(f)란** : 잠정가격과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하여 Y(해당) 또는 N(해당무)을 기재 **11(a)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이 반입된 사유 또는 용도 **11(b)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의 송품장 상의 과세가격 근거를 간략히 기재 **12(a~d)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Ⅱ. 제2방법 또는 제3방법 경우 (Part A~C)** **Part A** **13란** : 이 란의 첫째 칸에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기입. 이 가격이 원화가 아니면 통관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입하고 이에 따라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둘째 칸에 기입. **Part B :** Part B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기입 **14(a)란 :** 13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수량에서 현재 수입하는 건보다 적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의 수량이라면 더 낮아 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현 행	개 정
14(b)란 : 13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는 다른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 같은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다면 더 낮아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 주의 : 14(a)와 14(b)란에 기입된 어떠한 금액이든 이를 뒷받침할 서류상의 증거가 필요 14(c), (d) 및 (e)란은 이러한 비용이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송품장상 가격이외에 추가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만 기입 예를 들면, 원래 구매가 CIF 조건으로 행해졌으면 이 란들은 기입할 필요가 없음. **14(c)란** : 동종동질/유사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되는 장소를 기입. 현재 수입하는 물품이 다른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해 운송되었고, 그러한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하는 경우 운송비용이 13란의 거래가격에 포함된 비용과는 다를 경우, 13란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운송비용을 기입 **14(d)란** : 13란 가격에 포함된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가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와 다른 경우, 13란 가격에 포함된 그러한 비용을 기입 **14(e)란** : 13란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보험료와는 다른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다면, 13란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기입 **15란** : 14(a) 내지 14(e)란 금액 합계를 원화로 기입 **Part C** **16(a)란** : 13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수량에서 현재 수입하는 건보다 많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의 수량이라면 더 커질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커질 금액을 기입 **16(b)란 :** 13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는 다른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 같은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다면 더 커질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커질 금액을 기입 **16(c)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를 기입. 14(c)란에서 공제가 행해졌다면, 이 란에는 현재(대한민국내 수입장소로의) 수입을 위한 운송비용을 기입. **16(d)란** : 수입자가 현재 수입을 위해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부담했고, 이러한 비용이 13란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과 다르거나 그 비용에 추가되어 있는 경우 그 비용 금액을 기입 **16(e)란** : 13란에 기입된 거래가 보험료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한 것이거나, 현재 수입하고 있는 물품의 보험료가 그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보다 클 경우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료 기입 **17란** : 16(a) 내지 16(e)란의 합계금액을 원화로 표시하여 기입 **18란** : 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된 금액 기입. 이 금액은 13번 금액에서 15번 공제조정 요소를 빼고, 17번 가산조정 요소를 합한 금액임. **III. 제4방법 경우 (Part D~ E)** **Part D** **19란** : 물품의 단위가격 기입. 환율 - 단위가격이 원화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란에 수입통관당시 적용되는 환율을 표시하고, 란 하단에 원화로 환산된 가격 기입.	**14(b)란 :** 13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는 다른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 같은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다면 더 낮아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 주의 : 14(a)와 14(b)란에 기입된 어떠한 금액이든 이를 뒷받침할 서류상의 증거가 필요 14(c), (d) 및 (e)란은 이러한 비용이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송품장상 가격이외에 추가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만 기입 예를 들면, 원래 구매가 CIF 조건으로 행해졌으면 이 란들은 기입할 필요가 없음. **14(c)란** : 동종동질/유사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되는 장소를 기입. 현재 수입하는 물품이 다른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해 운송되었고, 그러한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하는 경우 운송비용이 13란의 거래가격에 포함된 비용과는 다를 경우, 13란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운송비용을 기입 **14(d)란** : 13란 가격에 포함된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가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와 다른 경우, 13란 가격에 포함된 그러한 비용을 기입 **14(e)란** : 13란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보험료와는 다른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다면, 13란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기입 **15란** : 14(a) 내지 14(e)란 금액 합계를 원화로 기입 **Part C** **16(a)란** : 13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수량에서 현재 수입하는 건보다 많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의 수량이라면 더 커질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커질 금액을 기입 **16(b)란 :** 13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는 다른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 같은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다면 더 커질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커질 금액을 기입 **16(c)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를 기입. 14(c)란에서 공제가 행해졌다면, 이 란에는 현재(대한민국내 수입장소로의) 수입을 위한 운송비용을 기입. **16(d)란** : 수입자가 현재 수입을 위해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부담했고, 이러한 비용이 13란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과 다르거나 그 비용에 추가되어 있는 경우 그 비용 금액을 기입 **16(e)란** : 13란에 기입된 거래가 보험료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한 것이거나, 현재 수입하고 있는 물품의 보험료가 그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보다 클 경우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료 기입 **17란** : 16(a) 내지 16(e)란의 합계금액을 원화로 표시하여 기입 **18란** : 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된 금액 기입. 이 금액은 13번 금액에서 15번 공제조정 요소를 빼고, 17번 가산조정 요소를 합한 금액임. **III. 제4방법 경우 (Part D~ E)** **Part D** **19란** : 물품의 단위가격 기입. 환율 - 단위가격이 원화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란에 수입통관당시 적용되는 환율을 표시하고, 란 하단에 원화로 환산된 가격 기입.

현 행	개 정
Part E : Part E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표시 **20란** : 20(a) 내지 20(h)란을 적절히 기입 20(a)와 20(b)는 둘중 하나만 기입. 하나를 기입하면 다른 란은 기재하면 안됨. **20(a)란** : 대한민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고, 19란에서 신고된 단위가격에 포함된 수수료 금액을 기입 **20(b)란** : 대한민국내 물품판매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통상적으로 가산된 금액을 기입 **20(c)란** : 19란에 신고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관세가격 결정을 위해 공제되어야 하는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되는 운송비용을 기입, 19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수입된 이후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기입 **20(d)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후의 보험료를 공제하고자 하면, 그 금액을 기입 **20(e)란** :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기입, 19란에 기입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된 후 부담된 것 **20(f)란** : 19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된후 배달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기입하고 비용성격을 약술. **20(g)란** : 19란의 단위가격이 수입후 추가가공(예 : 재포장)된 물품의 것이면, 그 금액의 공제를 주장 **20(h)란 :** 19란의 단위가격이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된 후 조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입 * 주의 : 20(a) 내지 20(h)란의 공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함. 세관당국이 공제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한 것이 있다면, 왼쪽 빈칸에 그 참고번호를 기입 **21란** : 20(a) 내지 20(h)란의 금액을 더해 합계를 기입. 이 금액은 원화로 표시 **22란** : 현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될 금액 기입. 즉, 19란 금액에서 21란 금액을 뺀 금액임. **IV. 제5방법 및 제6방법 경우 (Part F~G)** **Part F** : Part F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 **23란 :** 산정가격(제5방법) 혹은 제6방법에 따른 가격을 기입 **Part G** : Part G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 **24(a)란** : 23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 수입장소로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수입장소와 운송비용을 기입 **24(b)란** : 23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로 통관되기 전의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입 **24(c)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그 보험료가 23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금액을 기입 **25란** : 24(a) 내지 24(c)란의 금액을 더하여 기입 **26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될 금액 기입. 즉, 23란과 25란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	**Part E :** Part E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표시 **20란** : 20(a) 내지 20(h)란을 적절히 기입 20(a)와 20(b)는 둘중 하나만 기입. 하나를 기입하면 다른 란은 기재하면 안됨. **20(a)란** : 대한민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고, 19란에서 신고된 단위가격에 포함된 수수료 금액을 기입 **20(b)란** : 대한민국내 물품판매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통상적으로 가산된 금액을 기입 **20(c)란** : 19란에 신고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관세가격 결정을 위해 공제되어야 하는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되는 운송비용을 기입, 19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수입된 이후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기입 **20(d)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후의 보험료를 공제하고자 하면, 그 금액을 기입 **20(e)란** :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기입, 19란에 기입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된 후 부담된 것 **20(f)란** : 19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된후 배달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기입하고 비용성격을 약술. **20(g)란** : 19란의 단위가격이 수입후 추가가공(예 : 재포장)된 물품의 것이면, 그 금액의 공제를 주장 **20(h)란 :** 19란의 단위가격이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된 후 조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입 * 주의 : 20(a) 내지 20(h)란의 공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함. 세관당국이 공제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한 것이 있다면, 왼쪽 빈칸에 그 참고번호를 기입 **21란** : 20(a) 내지 20(h)란의 금액을 더해 합계를 기입. 이 금액은 원화로 표시 **22란** : 현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될 금액 기입. 즉, 19란 금액에서 21란 금액을 뺀 금액임. **IV. 제5방법 및 제6방법 경우 (Part F~G)** **Part F** : Part F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 **23란 :** 산정가격(제5방법) 혹은 제6방법에 따른 가격을 기입 **Part G** : Part G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 **24(a)란** : 23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 수입장소로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수입장소와 운송비용을 기입 **24(b)란** : 23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로 통관되기 전의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그 금액을 기입 **24(c)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그 보험료가 23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금액을 기입 **25란** : 24(a) 내지 24(c)란의 금액을 더하여 기입 **26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될 금액 기입. 즉, 23란과 25란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

현 행	개 정
3. 포괄가격신고서(C)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적용서식	**3. 포괄가격신고서(C)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적용서식**
ㅇ 동 서식은 전자문서와 서면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세요 ㅇ 포괄가격신고서는 동일한 해외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정기권(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신고)” 형식으로 개별 가격신고서 대신 이용 가능함 ㅇ 서식은 평가기초가 제1방법인 경우 사용됨. (제2방법~제6방법인 경우, D서식 사용)	ㅇ 동 서식은 전자문서와 서면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세요 ㅇ 포괄가격신고서는 동일한 해외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정기권(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신고)” 형식으로 개별 가격신고서 대신 이용 가능함 ㅇ 서식은 평가기초가 제1방법인 경우 사용됨. (제2방법~제6방법인 경우, D서식 사용)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수입물품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 **3란** : 수입물품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 2란 및 3란에는 한명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5(a)란**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선택(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 **5(b)란** : 특수관계의 종류를 선택 **5(c)란**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선택 **5(d)란** :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공식 선택 **6(a)란** :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조건에 구매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즉,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그 물품의 거래가격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예”로 답하고, 서식(D)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등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한은 “아니요”라고 답하여야 함 **6(b)란** :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가격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아니요"라고 답하고, 자세한 내역과 가격을 신고함. 조건 또는 사정이 없어도 "아니요"라고 답함.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라고 답해야 함. "예"라고 답하거나 이 질문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문의. 이 경우 서식(C)이 아니라 서식(D)으로 작성하여야 함 **6(c)란** : 수입물품의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다면 “예”로 답하고, 없다면 “아니요”로 답하며, “예”라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9 (c)에 답하여야 함 **6(d)란** : 질문9 (c)에서 귀속된 금액을 관세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없다면 “예”라고 답하고 서식(B)으로 작성하여야 함 **8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9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10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11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공제함. **12란** : 서명하기 전에 이 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람.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음. **13(a~d)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 **14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로 작성함.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수입물품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 **3란** : 수입물품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 2란 및 3란에는 한명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5(a)란**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선택(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 **5(b)란** : 특수관계의 종류를 선택 **5(c)란**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선택 **5(d)란** :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공식 선택 **6(a)란** :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조건에 구매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즉,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그 물품의 거래가격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예”로 답하고, 서식(D)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등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한은 “아니요”라고 답하여야 함 **6(b)란** :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가격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아니요"라고 답하고, 자세한 내역과 가격을 신고함. 조건 또는 사정이 없어도 "아니요"라고 답함.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라고 답해야 함. "예"라고 답하거나 이 질문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문의. 이 경우 서식(C)이 아니라 서식(D)으로 작성하여야 함 **6(c)란** : 수입물품의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다면 “예”로 답하고, 없다면 “아니요”로 답하며, “예”라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6 (d)에 답하여야 함 **6(d)란** : 질문6 (d)에서 귀속된 금액을 관세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없다면 “아니오”라고 답하고 서식(D)으로 작성하여야 함 **7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8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9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10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공제함. **11란** : 서명하기 전에 이 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람.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음. **12(a~d)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 **13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로 작성함.

현 행	개 정
4. 포괄가격신고서(D) - 기타 가격(제2방법~제6방법) 적용서식 ㅇ 동 서식은 전자문서와 서면신고서를 동시에 제출 ㅇ 포괄가격신고서는 동일한 해외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정기권(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신고)” 형식으로 개별 가격신고서 대신 이용 가능함. ㅇ D서식은 제1방법이 적용될 수 없어 제2방법~제6방법으로 적용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물품 판매인의 회사명,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 물품이 판매계약에 의해 수입된다면 판매자(송하인)는 수입 직전 물품의 소유주임. **3란** : 구매자(수하인)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 2란 및 3란에는 한명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5란** :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평가방법 기재. 한가지 방법만 기재 **6란** :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공식 선택. **7란** : 제4방법을 적용할 시에는 수입후 90일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8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의 용도와 가격 산정 근거를 기입. **9란** : 서명하기 전에 9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람.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포괄가격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음. **10(a~d)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 **11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로 작성함.	**4. 포괄가격신고서(D) - 기타 가격(제2방법~제6방법) 적용서식** ㅇ 동 서식은 전자문서와 서면신고서를 동시에 제출 ㅇ 포괄가격신고서는 동일한 해외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정기권(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신고)” 형식으로 개별 가격신고서 대신 이용 가능함. ㅇ D서식은 제1방법이 적용될 수 없어 제2방법~제6방법으로 적용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물품 판매인의 회사명,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 물품이 판매계약에 의해 수입된다면 판매자(송하인)는 수입 직전 물품의 소유주임. **3란** : 구매자(수하인)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 2란 및 3란에는 한명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5란** :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평가방법 기재. 한가지 방법만 기재 **6란** :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공식 선택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닌 경우 ‘⑤기타(특수관계거래 아님)’ 기입 **7란** : 제4방법을 적용할 시에는 수입후 90일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8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의 용도와 가격 산정 근거를 기입. **9란** : 서명하기 전에 9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람.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포괄가격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음. **10(a~d)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 **11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로 작성함.

현 행	개 정

[별표 제8호]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분야 (8개 분야)	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
① **권리사용료**	ㅇ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
	ㅇ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② **생산지원**	ㅇ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
	ㅇ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
③ **수수료·중개료**	ㅇ 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
	ㅇ 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ㅇ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
	ㅇ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⑤ **용기·포장비용**	ㅇ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ㅇ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⑥ **사후귀속이익**	ㅇ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ㅇ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⑦ **간접지급금액**	ㅇ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
	ㅇ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
	ㅇ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
	ㅇ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⑧ **특수관계자 거래**	ㅇ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
	ㅇ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 1.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가격신고건의** 영 제15조제5항 제1호 “**송품장**”과 제2호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는 **필수 제출**
2. ①부터 ~⑥까지: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3. ⑦ 간접지급금액: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채무 상계, 채무 변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경우
4. ⑧ 특수관계자 거래: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제8호]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분야 (8개 분야)	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
① **권리사용료**	ㅇ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
	ㅇ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② **생산지원**	ㅇ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
	ㅇ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
③ **수수료·중개료**	ㅇ 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
	ㅇ 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u>(합계 500만원 초과)</u>	ㅇ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
	ㅇ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⑤ **용기·포장비용**	ㅇ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ㅇ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⑥ **사후귀속이익**	ㅇ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ㅇ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⑦ **간접지급금액**	ㅇ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
	ㅇ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
	ㅇ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
	ㅇ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⑧ **특수관계자 거래**	ㅇ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
	ㅇ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 1.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가격신고건의** 영 제15조제5항 제1호 “**송품장**”과 제2호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는 **필수 제출**
2. ①부터 ~⑥까지: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u>(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의 경우 수입신고 건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초과 시 해당)</u>
3. ⑦ 간접지급금액: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채무 상계, 채무 변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경우
4. ⑧ 특수관계자 거래: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포괄가격신고서(D) - 기타 가격(제2~6방법) 적용

신고서의 작성책임	1. 이 신고서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고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실을 잘 일고 있는 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제출번호
	2. 작성자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회사법에 의한 대표이사, 이사 또는 경리책임자 입니다.	관세사부호 - 년도-일련번호
	3. 이 신고서는 피고용자나 대리인 또는 운송인에 의해서 서명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등록일로부터 1년) 년 월 일까지
작성요령	신고서 작성을 위한 간단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작성 전에 주의 깊게 읽어보신 후 신고서를 완성하시오. 세부사항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세관과부호 - 년도 - 일련번호
신고서 제출처	작성된 신고서와 사본을 다음 기관에 제출합니다. 물품의 주요 통관예정지 세관장 (수입통관부서)	
등록의 갱신,변경	이 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일 이후에는 갱신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 신고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기 신고서 제출처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신규 등록시와 동일합니다.	
관세사 등 대리인	등록번호는 수입신고 사용되므로 수입통관 대리인(관세사)에게 통지하십시오.	
수입품목의 기재	첨부 서식번호 4D-3 수입품목 목록에 수입품목의 HS번호와 품명 모델규격·성분을 영어로 작성하시오	

제출 자료의 사용 및 정보 보호

이 자료는 관세 등 세액계산과 범죄의 예방 및 조사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사에 관한 자료를 제3의 기관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의 정확성 체크, 범죄의 조사 및 예방, 공공시설보호 등 입니다. 이러한 제3의 기관은 국세청 등 다른 정부기관이 포함됩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가격신고자)

2.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3.**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4.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5.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은 무엇입니까? (a)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b)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c) 수입일과 거의 동시 또는 수입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90일 이내)에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된 당해물품, 동종/유사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 (제4방법) (e) 수출국 생산자의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 등 가산방법 (제5방법) (f)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결정되는 과세가격 (제6방법)	☐ ☐ ☐ ☐ ☐
6. [**수입가격 결정방법**]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국내판매가격(표준판매가격·평균판매가격·순판매가격 등) × (1- 할인율·재판매마진율) ② 국내판매가격(표준판매가격·평균판매가격·순판매가격 등) - 목표매출이익 (- 운임·관세 등) ③ 제조원가(표준원가·제3자구매가격 등) × (1 + Mark up율) ④ 제조원가(표준원가·제3자구매가격 등) × 계수 ⑤ 기 타 (상세 결정방법 입력)	[①~⑤ 택1]

개 정

[별지 제6호서식]

포괄가격신고서(D) - 기타 가격(제2~6방법) 적용

신고서의 작성책임	1. 이 신고서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고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실을 잘 일고 있는 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제출번호
	2. 작성자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회사법에 의한 대표이사, 이사 또는 경리책임자 입니다.	관세사부호 - 년도-일련번호
	3. 이 신고서는 피고용자나 대리인 또는 운송인에 의해서 서명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등록일로부터 1년) 년 월 일까지
작성요령	신고서 작성을 위한 간단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작성 전에 주의 깊게 읽어보신 후 신고서를 완성하시오. 세부사항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세관과부호 - 년도 - 일련번호
신고서 제출처	작성된 신고서와 사본을 다음 기관에 제출합니다. 물품의 주요 통관예정지 세관장 (수입통관부서)	
등록의 갱신,변경	이 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일 이후에는 갱신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 신고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기 신고서 제출처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신규 등록시와 동일합니다.	
관세사 등 대리인	등록번호는 수입신고 시 사용되므로 수입통관 대리인(관세사)에게 통지하십시오.	
수입품목의 기재	첨부 서식번호 4D-3 수입품목 목록에 수입품목의 HS번호와 품명 모델규격·성분을 영어로 작성하시오	

제출 자료의 사용 및 정보 보호

이 자료는 관세 등 세액계산과 범죄의 예방 및 조사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사에 관한 자료를 제3의 기관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의 정확성 체크, 범죄의 조사 및 예방, 공공시설보호 등 입니다. 이러한 제3의 기관은 국세청 등 다른 정부기관이 포함됩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가격신고자)

2.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3.**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4.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5.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은 무엇입니까? (a)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b)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c) 수입일과 거의 동시 또는 수입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90일 이내)에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된 당해물품, 동종/유사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 (제4방법) (d) 수출국 생산자의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 등 가산방법 (제5방법) (e)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결정되는 과세가격 (제6방법)	☐ ☐ ☐ ☐ ☐
6. [**수입가격 결정방법**]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국내판매가격(표준판매가격·평균판매가격·순판매가격 등) × (1- 할인율·재판매마진율) ② 국내판매가격(표준판매가격·평균판매가격·순판매가격 등) - 목표매출이익 (- 운임·관세 등) ③ 제조원가(표준원가·제3자구매가격 등) × (1 + Mark up율) ④ 제조원가(표준원가·제3자구매가격 등) × 계수 ⑤ 기 타 (상세 결정방법 입력)	[①~⑤ 택1]

현 행

[별지 제8호서식]

확정가격 신고(수리)서

(처리기간 : 15일)

① 수입신고번호		② 잠정가격신고 물품	
③ 수입신고 일자		④ 수입신고 수리일자	
⑤ 잠정 가산율		⑥ 확정 가산율	

⑦ 확정가격(확정 가산율) 산정내역 :

⑧ 가격신고 변경항목 (잠정신고 항목만 확정신고 가능)

구분		잠정가격 (화폐 단위:)	확정가격 (화폐 단위:)	차액
신고가격	(란 번호)			
가산요소	(가산 항목명)			
공제요소	(공제 항목명)			

⑨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 여부 (제11조제1항 적용) □ 예 □ 아니오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 및 산출 근거 증빙 자료 (필수)
4. 기타 가격신고 입증 자료 (필수)
5.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었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 확정가격신고 수리는 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확인행위로 신고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 정

[별지 제8호서식]

확정가격 신고(수리)서

(처리기간 : 15일)

① 수입신고번호		② 잠정가격신고 물품	
③ 수입신고 일자		④ 수입신고 수리일자	
⑤ 잠정 가산율		⑥ 확정 가산율	

⑦ 확정가격(확정 가산율) 산정내역 :

⑧ 가격신고 변경항목 (잠정신고 항목만 확정신고 가능)

구분		잠정가격 (화폐 단위:)	확정가격 (화폐 단위:)	차액
신고가격	(란 번호)			
가산요소	(가산 항목명)			
공제요소	(공제 항목명)			

⑨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 여부 (제11조제1항 적용) □ 예 □ 아니오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1. 송품장
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3. 가산금액, 간접지급금액 등 관련 계약서, 각종 비용 및 산출 근거 증빙자료 (필수)
4.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5. 기타 가격신고 입증 자료 (필수)
6.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었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 확정가격신고 수리는 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확인행위로 신고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 행

[별지 제13호서식]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물품	⑤ 잠정가산율	⑥ (신청인 산출) 확정가산율	⑦ 통관세관장

⑧ 잠정가격신청사유	
⑨ 최근3년 잠정·확정가산율 및 확정가산율 확인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⑩ 잠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⑪ 신청인이 계산한 확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출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확정가산율 산출에 필요한 증빙 서류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

개 정

[별지 제13호서식]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물품	⑤ 잠정가산율	⑥ (신청인 산출) 확정가산율	⑦ 통관세관장

⑧ 잠정가격신청사유	
⑨ 최근3년 잠정·확정가산율 및 확정가산율 확인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⑩ 잠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⑪ 신청인이 계산한 확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출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확정가산율 산출에 필요한 증빙 서류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과세자료)

현 행	개 정

[별지 제30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0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 행	개 정
[별지 제30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7항제4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0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7항제4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별지 제33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 【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재심사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 정

[별지 제33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 【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재심사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 행	개 정
[별지 제33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7항제4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3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7항제4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신 설>	[별지 제39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접수증 【일반용】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⑦ 수입 예정 물품				
⑧ 수입 예정 시기		⑨ 통관 예정 세관		
⑩ 접수일				

「관세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관인)